전북특별자치도의회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27호

2026년도 제1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6년도 제1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 여러분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11월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인원(1개 분야, 총 1명)

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계약기간	근무예정부서
홍보	지방행정7급 (일반임기제)	1명	1년	홍보담당관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 법령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근무부서는 인력 운영상 추후 변동될 수 있음

2 임용예정직무

임용분야	임용직급	담당 업무
홍보	지방행정7급 (일반임기제)	○ 의정활동 사진 촬영 ○ 기자회견 및 기자간담회 촬영 ○ TV, 라디오 방송 녹화 및 녹음 ○ 신문·방송사 사진·영상제공 및 자료 스크랩

3 근거 법령 등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제31조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71호)

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등 관계 법령

4 보수 수준

*기준일 : 면접시험일

가. 연봉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직급별 **연봉 한계액의 범위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연봉상한액	연봉하한액
일반임기제 7급	70,782천원	50,272천원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나. 기타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5 응시자격

*기준일 : 면접시험일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주소지·성별·연령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나. 응시 자격요건

임용분야	직급	임용(응시)자격
홍보	지방행정 7급 (일반임기제)	❶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❷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❸ 8급 또는 8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회, 지방의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언론사 등에서 사진 촬영 관련분야 근무 경력

※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업무내용 등은 붙임의 「임용예정분야 직무기술서」 참조

※ 자격요건 주의사항

○ 기본사항

- 임용(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임용(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경력의 범위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최종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경력'은 임용 분야별 자격요건에 명시된 관련분야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에서의 경력만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대학 조교 경력과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중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국공립대학 및 사립 대학에서의 관련분야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인정합니다.
- 경력은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력증명서의 기재내용만으로 관련 경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경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경력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 동일 기간에 중복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합니다.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주당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경력을 산정합니다.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경력 산정 방법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기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예시)1년간 주 30시간 시간제 근무 : 9월 인정
- 근무기간 또는 근무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를 거쳐 경력 인정 범위 결정
- 전임교수가 아닌 강의경력 : 실제 강의시수 등을 기준으로 경력 산정

-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폐업사실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용자격 관련분야와 무관한 경력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6.11.20.(금) ~ '26.12.1.(화)	'26.12.2.(수) ~ '26.12.4.(금)	'26.12.11.(금)	'26.12월(예정)	'26.12월(예정)

○ 본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고,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임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임

7 시험 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1. 자기소개서 / 2. 직무수행 계획서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실무경력의 적합성 및 연관성

나. 2차시험 : 직무관련 면접시험

○ **대 상 자**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내용**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 등에 대한 면접 실시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을 최종합격자로 결정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8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 서류 안내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12. 2.(수) ~ 2026. 12. 4.(금), 18:00까지 (3일간)

○ 접수장소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정관 인사팀(1층)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 우편접수**

※ 등기우편 접수 예정자는 발송 전 반드시 인사팀에 사전 연락 바랍니다.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장소에 제출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내에만 접수가능(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함

▹ **주소 : (우549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정관 인사팀(1층)**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063-280-4782)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방문 '**통상환증서**'를 제출서류와 동봉 제출(현금×)

나. 제출서류

붙임3 **참고**

순번	서 류	내 용
1	응시원서	**별지서식 제2호**
2	이력서	**별지서식 제3호**
3	자기소개서	**별지서식 제4호**
4	직무수행계획서	**별지서식 제5호**
5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대학교 졸업증명서, 석·박사학위 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사본
6	경력 및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사실 확인서
7	경력증빙서류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또는 소득금액 증명서(국세청)
8	자격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서식 제6호**
9	주민등록초본	1부(남·여 공통 제출, 남성 응시자는 병적사항 포함)
10	해당 분야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11	관련분야 연구실적 증빙자료	해당자에 한함
1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별지서식 제7호**

9 안내 및 참고사항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인사위원회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라. 모든 증명서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받은 후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학위증은 사본 제출 가능하며,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공고일 기준 6개월을 초과하여 발급된 증명서 제출 가능

마. 응시서류의 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서류에 누락 또는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의 보완 요구를 하지 않으며, 접수 시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바.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 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사유로 재공고하는 경우, 기존 응시자는 기제출한 서류로 갈음

사.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아.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 신체검사 및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정관 인사팀(☎063-280-47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임용예정분야 직무기술서(홍보)

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홍보	지방행정7급(일반임기제)	1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홍보담당관

주요업무	○ 의정활동 사진 촬영 ○ 기자회견 및 기자간담회 촬영 ○ TV, 라디오 방송 녹화 및 녹음 ○ 신문·방송사 사진·영상제공 및 자료 스크랩

필요역량	○ (공 통 역 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 (직렬별 역량) 창의력, 순발력, 분석력

필요지식	○ 주제 선정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의정에 대한 이해도 및 지식 ○ 의정 홍보 관련 법령(「공직선거법」 등) 해석 지식

	관련분야
임용(응시) 자격요건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회, 지방의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언론사 등에서 **사진 촬영 관련분야 근무 경력**

붙임 2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자격 정지 등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붙임 3 제출 서류 안내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ㅇ 별지서식 제2호 작성, 자필서명 필수 - 응시수수료 : 전북특별자치도 수입증지 7천원(7급) * 대한민국 수입인지 사용 불가 ※ 전북특별자치도청 1층 NH농협은행 구입(09:00~17:00/카드결제만 가능) ※아래 수수료 면제대상은 증빙자료 제출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ㅇ 별지서식 제3호 작성, 자필서명 필수 - 응시자격요건 관련 경력에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ㅇ 응시분야와의 업무관련성 중심으로 A4 3매 이내로 작성, 자필서명 필수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등 개인 신상이 드러나지 않아야 하며,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ㅇ 별지서식 제5호 활용, 5매 이내 작성, 자필서명 필수
5.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학위증) 사본 1부	ㅇ 대학교 졸업증명서, 석·박사학위 수료증 사본 - 석사학위 이상 수료자도 대학 졸업증명서 제출 필요
6. 경력 또는 재직 증명서 1부	ㅇ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ㅇ 증명서에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담당자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특히 담당업무가 지원하는 분야의 실무경력 인정범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ㅇ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은 불인정됨 ㅇ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된 경력증명서 제출 ※ 최종합격 후 경력요건 미충족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ㅇ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자등록증(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 제출
7. 경력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1부	ㅇ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해당기관 홈페이지 발급가능)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中 1종 ㅇ 소득금액 증명서(국세청 발급) - 인정 받고자 하는 경력기간 전체가 확인될 수 있도록 해당 연도별 증명서 필요 ※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중 1종만 제출
8.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ㅇ 자필서명 필수
9. 주민등록초본 1부	ㅇ 남·여 공통 제출, 남성 응시자는 병적사항 포함 - 병적사항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10.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ㅇ 해당자에 한함
11. 관련분야 연구실적 증빙자료	ㅇ 관련분야에 해당하는 연구경력을 경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연구기간 및 연구내용이 명시된 연구실적증명서를 제출
1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별지서식 제7호)	ㅇ 자필서명 필수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공증필) 첨부